

내부거래위원회 규정

제정 2022. 5. 12.

제1차 개정 2022. 6. 15.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(이하 '회사'라 한다) 내부거래위원회 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,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(권한) 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(이하 '공정거래법'이라 한다) 에 따라, 회사와 회사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.

제4조 (구성) ① 위원회 위원 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 은 이사회에서 선임 및 해임한다.
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가 포함되어야 하고, 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이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③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.

제5조 (위원장) ① 위원회는 사외이사 중 1인을 호선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의장을 선임한다.
②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, 재임위원 중 최장 연임 위원이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 (소집권자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②항에 따른 직무 대행자가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②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,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7조 (소집절차)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, 우편, 전자우편, 모사전송 (FAX),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①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8조 (결의방법) ① 내부거래의 보고 및 승인절차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의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9조 (부의사항)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공정거래법에 의한 대규모 내부거래. 단, 관계법령 및 내부규정 등에 의해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 2. 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체 사항

제10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,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11조 (의사록)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12조 (보고)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.

제13조 (간사)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.

③ 위원회는 당사 회계담당부서가 의안제출 등 위원회 전반의 간사 업무를 지원한다.

제14조 (규정의 개폐)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